

소프트테니스경기장 공인·검증 규정  
대회별 경기장 시설 규정

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

# 소프트테니스 경기장 공인. 검정 규정

## 제1조 규정의 근거

본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(이하 본회라 칭한다) 경기규칙 제2장에 의하여 공인 인정하기 위한 내용이다.

## 제2조 경기장 코트 및 시설 점검 내용

- 1) 코트 면의 조건
- 2) 코트의 규격
- 3) 코트면의 경사도
- 4) 조명시설 조도
- 5) 부대시설

## 제3조 공인의 필수 조건

- 가) 시공 및 시행업체는 실적(3곳 이상의 시설 실적)이 있어야 한다.
- 나) 소프트테니스 경기에 맞는 부대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다) 코트의 재질(케미칼 코트 류, 클레이 코트 류)로 구분한다.
- 라) 국제대회, 전국소년체전, 전국체전, 전국규모정구대회 개최 시 코트 수는 경기운영상 지정 면수를 확보하여야 하며, 코트 재질 또한 지정 종류로 설치되어야 한다.
- 바) 코트시설 후 2년 내의 부실이 적발 되었을 시는 공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4조 공인료

- 가) 소프트테니스장의 공인료: 코트 면당 1,0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처리하지 않는다.
- 나) 공인료는 본회 지정계좌로 계좌입금으로 처리한다.
- 다) 제3조 바)항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공인검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## 제5조 공인인정

- 가) 공인을 위한 단체가 공인 신청 후 본회는 소프트테니스장 공인인정 점검내용과 대회별 경기장 시설 규정에 의하여 현장 공인 점검 후에 내용에 적합할 경우 공인을 인정한다. 이때 현장 점검은 본회 실무이사과 사무처에서 실행한다.
- 나) 공인 점검 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선공인 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보완은 완공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다) 공인은 별도의 공인인증서와 공인현판을 공인을 신청한 단체에 전달한다.

## 제6조 규정의 시행시기

- 가) 공인규정은 1992년 2월11일 시행한다.
- 나) 수정된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다) 수정된 규정은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라) 수정된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마) 수정된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바) 수정된 규정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사) 수정된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아) 수정된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자) 수정된 규정은 2019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차) 수정된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소프트테니스장 공인인정 점검 내용

1. 경기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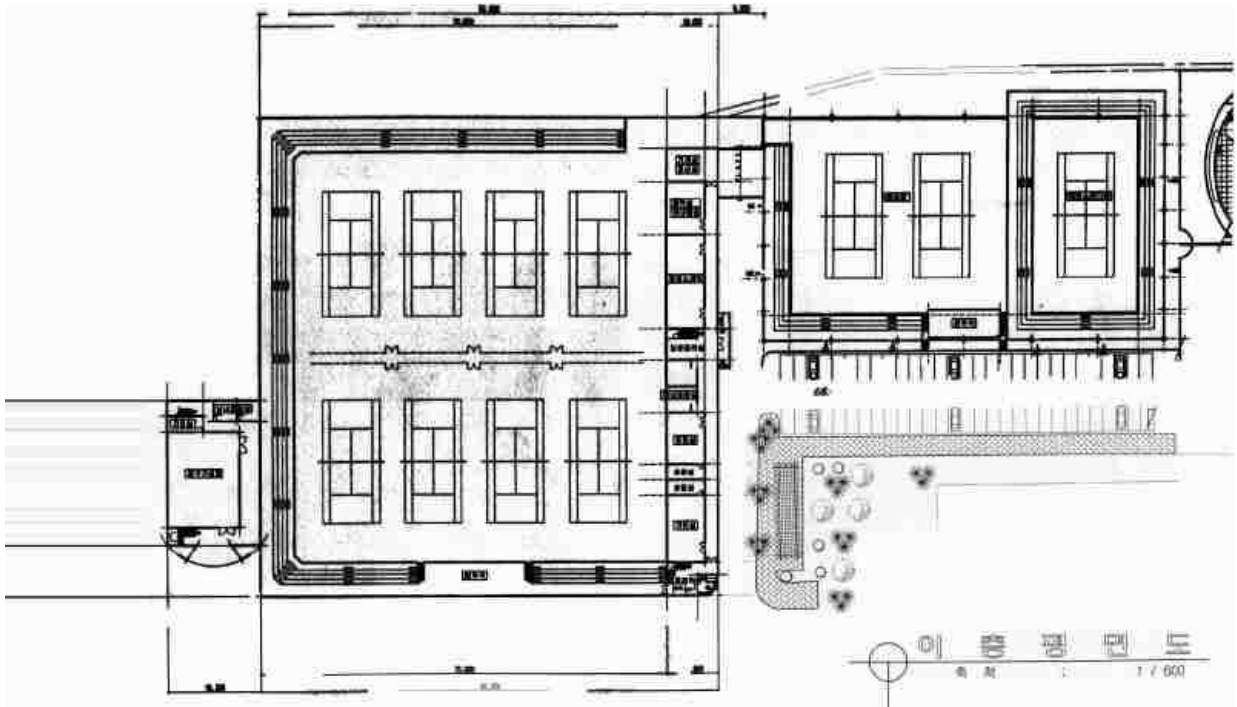
- 경기단체명 :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
- 위 치 :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

2. 규정 근거

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소프트테니스장 규칙 제2장 및 제3장에 의하여 공인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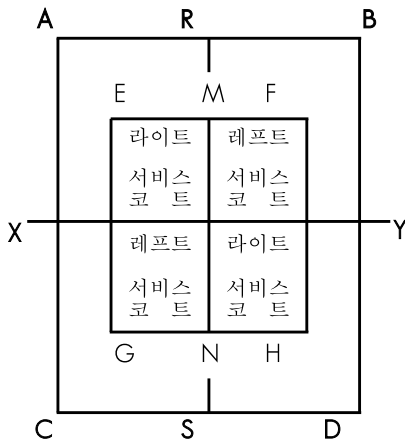
3. 시설 기준 평면도

(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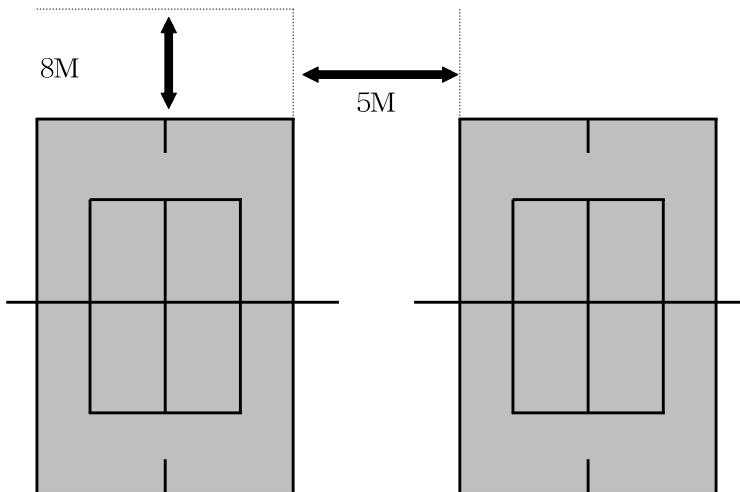
(북)

① 코트의 명칭 및 도면



(라인 명)	(구 획)	(길이)
사이드 라인	AC, BD	23,77m
베이스 라인	AB, CD	10,97m
서비스 사이드 라인	EG, FH	12.80m
서비스 라인	EF, GH	8.23m
서비스 센타 라인	MN	12.80m
센타 마크	R, S	안쪽에서 15cm

② 아웃코트



4. 공인 시설 규정

가. 소프트테니스 코트

○ 소프트테니스장은 코트와 아웃 코트, 넷 포스트, 심판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.

나. 코트와 아웃 코트

○ 코트와 아웃 코트는 같은 평면의 평탄한 넓이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되어야 한다.  
또 바깥쪽으로도 배수를 생각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를 두어야 한다.

다. 코트의 종류

○ 소프트테니스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클레이 종류와 합성재료를 사용하는

케미컬 종류로 나눈다. 경기장 시설 방식에 따라 아웃 도어(양투카, 세미-양투카, 클레이, 모래의 인조 잔디, 전천후형 케미칼, 기타)와 인도어(목판, 모래의 인조 잔디, 경질라바-케미칼, 기타) 등으로 한다.

클레이 종류와 케미컬 종류, 기타 종류는 다음으로 한다.

-클레이 종류 코트

- \*클레이코트
- \*그린클레이코트
- \*양투카 코트
- \*잔디 코트
- \*기타 클레이계 코트

-케미컬 종류 코트

- \*아크릴
- \*라텍스
- \*인조잔디
- \*G-클레이

-기타

- \*마루코트

#### 라. 코트 면 조건

- 표면의 평활성: 투구한 공이 불규칙 바운드가 없어야 한다.
- 타구한 공이 정확히 바운드할 수 있는 단단함과 밧과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.
- 인조잔디는 솔기가 16밀리에서 21밀리 범위 내가 되어야 한다.
- 코트라인이 선명하고 표면이 반사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한다. 클레이 코트 종류의 코트 라인 은 라인벨트로 설치되어야 한다.
- 양투카 코트를 시설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(물분사기)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마. 코트 규격

- 코트는 길이 가로 23.77m, 세로 10.97m의 장방형으로 구획된 라인의 외측을 경계로 하고 그 중앙에 넷 포스트를 세워 네트로 양분한다.

#### 바. 실내코트

코트의 규격은 실외코트와 동일하며 천장의 높이는 네트의 선상에서 10.00m이상, 후방 코트 뒤에서는 5.m 이상으로 한다. 단. 본 규정 이전에 설비가 된 코트는 예외로 한다.

#### 사. 방위

코트의 방위는 경기자가 태양광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트의 장축을 남/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북반구에서는 약간 북/서에서 남/동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다.

경기자와 태양고도, 방위각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, 우리나라와 같은 남/북

방향으로 긴 나라에서는 위도에 의해 트는 각도를 달라지게 하여야 한다. 단 실내 및 돔코트는 예외로 한다.

(지표삽입)

### 태양의 고도에서 구하는 코트의 방위

북위	코트의 자축방위(x)
25° ~ 30	9° 16' ~ 10° 47'
30° ~ 35	10° 47' ~ 12° 14'
35° ~ 40	12° 14' ~ 13° 39'
40° ~ 45	13° 39' ~ 15° 01'

#### 자. 경사도

- 코트의 표면은 실내 및 돐구장은 평평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실외의 경우 비가 올 경우 배수를 고려하여 최고 한도 아래와 같은 경사도를 유지해야만 공인검정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- ① 클레이 재질의 코트: 0.3%이내
  - ② 케미칼 재질의 코트: 0.5%이내
- 경사방향: 한쪽 사이드라인에서 다른 쪽 사이드라인 방향으로 즉 가로경사로 이루어 져야 한다.

## 5. 세부 시설 규정

#### 가. 코트의 라인

- 코트의 라인은 원칙으로 백색으로 폭 5cm~6cm 이내로 한다. 단 베이스라인의 폭은 5cm~10cm 이내로 한다.

#### 나. 아웃 코트

- 아웃 코트는 코트의 주위 넓이로서 뒤로 8M이상 사이드 라인에서 옆으로 6M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그 코트가 2면 이상 일 경우에는 코트에 접하는 사이드라인 간격은 5M 이상을 권장하되 부득이 한 경우 허용범위를 4.62m 로 한다(2014년부터 시행).

#### 다. 넷 포스트

- 넷 포스트는 직경 7.5cm 이상 15cm 이내로 한다.

#### 라. 넷 포스트의 위치

- 넷 포스트는 사이드 라인의 중앙부의 외측에 위치하고 양 사이드 라인에서 동일한 거리에 수직으로 고정한다.
- 양 넷 포스트의 간격은 그 외측이 12.80M, 높이는 1.07M로 한다. 단, 넷 포스트의 높이를 1.06M에서 1.07M까지 허용 범위로 한다.

#### 마. 심판대

- 심판대의 좌석의 높이는 1.50m를 표준으로 하고 넷 포스트에서 심판대의 최단 거리는 수평으로 60cm 이내로 한다.

#### 바. 네트의 규격

- 색은 흑색으로 한다.
- 높이는 1.07M로 한다. 단, 설비 상황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.06M에서 1.07M까지 허용 범위로 한다. (네트를 평평하게 쳤을 때 높이는 사이드라인 선상에서 1.07M로 수평으로 한다.)
- 길이는 12.65M 로 한다.
- 그물코는 가로, 세로 3.5cm 이내의 사각형으로 한다
- 와이어 로프(줄)의 길이는 15M, 직경 4.5mm를 표준으로 한다.
- 상단은 양면에 폭 5cm~6cm 이내의 백포로 싸서 단다.
- 네트의 양단은 넷 포스트에, 하단은 코트에 접촉되어야 한다.

사. 펜스의 설치

-펜스의 설치는 경기 중 소프트테니스공이 빠지지 않는 망으로 설치하고 시야 보호용막 또는 방풍막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1m20 이상으로 한다. 단, 관중의 시선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자. 배수로의 설치

-배수로는 경기장 안에 펜스 앞에 설치가 되어야 하며 경기에 지장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. 배수로의 폭은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웃코트 길이에 감안하여 설치가 되어야 한다.

또한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외부 배수관과 조합이 되어야 하며 낙엽이나 기타 물건이 막히지 않도록 하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 윗면에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. 커버의 재질은 미끄럼이 없는 재질이 되어야 한다.

6. 부대시설

가. 조명 및 조도

- 야간경기를 대비하여 경기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이 필요하다.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공식경기용 조도는 제곱미터당 최소 800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중계방송 코트는 HD방송 관계로 선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1,200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균도는 조도의 균일성으로 코트의 최고의 밝기와 최저의 밝기의 빛을 나타내며 균도가 떨어지면 경기와 판정에 방해가 되므로 공식 경기용 균도의 기준치는 1:1.5로 한다.
- 실내코트 조명은 경기 중 타구한 공에 방해가 되는 것을 최소로 하며, 또한 선수의 정상적인 시선에 방해가 되는 직접반사를 피하도록 설치한다.
- 조명기구 설치의 높이는 10m이상으로 한다.

나. 관중석

- 전국규모대회: 800석 이상
- 전국체육대회, 소년체육대회: 500석 이상

다. 국기계양대

- 태극, 협회기, 개최시도 관공서기, 개최시도연맹기, 기타 등 기본 5개의 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라. 본부석

- 대회관계자가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로 하다(기준치 10평 이상)

마. 진행실

- 대회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로 하며 전산, 집기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(기준치 6평 이상)

바. 회의실

- 경기부, 심판부 기타 대회관련 부서 인원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로 하다 (기준치 10평 이상)

사. 방송실

- 방송장비,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한다

자. 의료실

- 부상 선수를 위한 치료실이 구비되어야 하며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 진행실에 공동 설비할 수 있다.

차. 심판실 및 운영요원실

- 휴식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심판실과 운영요원실이 인원수에 맞게 별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.

카. 도핑실

- 도핑검사 실시 시 도핑관련 규정에 의한 공간과 물품이 설비가 되어야 한다.

타. 용구창고

- 용구,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코트 면수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할 수 있다.

파. 세면실 및 화장실

- 선수, 임원, 관중을 위한 세면실과 화장실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

하. 탈의실 및 샤워실

- 선수를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실이 구비되어야 한다. 국제대회의 경우 반드시 설비되어야 한다.

거. 주차장

- 선수단, 관람자, 임원을 위한 구획된 주차장이 설비가 되어야 한다.

## 7. 기타 시설사항

가. 우천 시 준비사항

- 경기 중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실내코트 또는 돔코트로 구성된 경기장이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코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천막을 준비하여야 한다.
- 준비 수량은 전체 코트 면수의 절반 가량을 준비하여 우천시 경기시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때 반드시 조명은 필수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.
- 배수 시설은 경기에 지장이 없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녹이 생기기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. 배수 시 오물이나 급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하여 배수가 막히지 않도록 설비가 되어야 한다.

나. 스코아 보드판

- 스코아 보드판은 전자식과 수동식이 있다.
- 스코아 보드는 팀명, 1매치, 2매치, 3매치, 4매치, 5매치, 볼카운트 등이 부착 또는 표기가 될 수 있어야 함.
- 수동식 번호판은 매치 카운트 번호판 0, 1, 2, 3, 4, 5×2개, 볼카운트 번호판 0,1,2,3,4,5,6,7,8,9,10×2개가 필요로 하다.
- 스코아 보드판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.



# 기타 공인 규정

## 1. 코트 시설 검정 규칙

- 1) 코트면의 조건
- 2) 코트의 규격
- 3) 방위 및 경사도
- 4) 조명시설 조도 및 균도
- 5) 부대시설

## 2. 공인의 필수 조건

- 가) 소프트테니스장 및 테니스장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업체가 진행하여야 한다.
- 나)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(ISTF)의 공인 규정이 없기에 유사종목인 국제테니스연맹(ITF)의 공인된 제품으로 하되 차후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 공인규정이 확정될 경우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에 공인된 제품으로 한다.
- 다) 코트의 재질(하드코트, 클레이코트, 기타)로 구분한다.
- 라) 국제대회, 전국소년체전, 전국체전 개최 시 코트 수는 별첨에 의하여 각 대회별 필요 이상의 코트가 한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.
- 마) 공인은 반드시 1차 토목공사 경사도 공인후 2차 표층공사 검증을 받아 공인을 득할 수 있다.

## 3. 코트, 조명, 기자재

- 가) 코트의 공인검정료
- ① 토목공사 1면 당 공인료 600,000원. 단, 토목공사 공인 시 적용하며 부가세는 처리하지 않는다.
  - ② 표층공사 1면 당 공인료 1,00,0000원. 단, 부가세는 처리하지 않는다.
- 나) 조명시설 공인료는 1개면 당 40만원. 단, 조명시설 공인 시 적용하며 부가세는 처리하지 않는다.
- 다) 상기 가, 나항에 시공사와 제품이 상이할 경우 각각 공인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라) 코트 기자재 공인료 및 사용권**
- 심판대, 스코아보드, 포스트, 넷트의 공인 시 공인료는 각 3,000,000원으로 하며, 본 협회의 고유 번호 사용료는 각 개당 3%로 적용한다. 단, 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.

## 4.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및 개보수 구분 의미

- ① 개보수: 기존의 코트 수가 변동이 없이 코트면과 기타 부대 시설을 개보수 및 하자보수 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② 신설: 기존 소프트테니스장의 코트 수 증가 또는 감소를 해서 코트를 정비하는 것은 신설로 의미한다.

# 대회별 경기장 시설 규정

소프트테니스경기 대회별 경기장 시설 규모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## 1.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선수권대회

- 가. 1,000석 규모의 관중석
- 나. 500석 규모의 보조 관중석
- 다. 12면 이상의 주경기장 코트
- 라. 10면 이상의 보조경기장 코트
- 마. 코트면은 클레이코트 재질, 케미칼코트 재질로 한다.

## 2. 아시아경기대회, 동아시아경기대회

- 가. 1,000석 규모의 관중석
- 나. 300석 규모의 보조 관중석
- 다. 12면 이상의 주경기장 코트
- 라. 5면 이상의 보조경기장 코트
- 마. 코트면은 클레이코트 재질, 케미칼코트 재질로 한다.

## 3. 전국체육대회

- 가. 500석 규모의 관중석
- 나. 12면 이상의 주경기장 코트
- 다. 16면 이상의 보조경기장 코트(연습코트 포함)
- 라. 코트 면은 클레이코트 계열로 하여야 한다. 단, 인조잔디코트도 가능하다.

## 4. 소년체육대회

- 가. 500석 규모의 관중석
- 나. 6면 이상의 주경기장 코트
- 다. 16면 이상의 보조경기장 코트(연습코트 포함)
- 라. 코트 면은 클레이코트 계열로 하여야 한다. 단, 인조잔디코트도 가능하다.

## 5. 전국규모대회

- 가. 800석 규모의 관중석
- 나. 12면 이상의 주경기장 코트
- 다. 8면 이상의 보조경기장 코트(연습코트 포함)
- 라. 코트 면은 실외(양투카, 세미-양투카, 클레이, 모래의 인조잔디, 전천후형 케미칼)와 실내, 돔(양투카, 세미-양투카, 클레이, 모래의 인조잔디, 전천후형 케미칼) 등으로 한다.
- 마. 선수부상 방지를 위하여 전천후형 케미칼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.

### 부칙(2015.03.26)

1. 대회별 경기장 시설규정 '3. 라' 사항은 본회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심의, 의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코트 면을 '양투카 또는 세미 양투카 코트'에서 '클레이코트 종류' 로 규정 변경 시행한다.
2. 단, '부칙 1조' 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전국체전은 클레이코트 종류, 2016년도 전국체전은 인조잔디코트로 실시한다.
3. 대회별 경기장 시설규정 '4. 라' 사항은 부칙 1에 의하여 처리한다.
4. '부칙 2' 항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시행한다.

### 부칙(2023.02.15)

1. 이 규정은 본 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